

國際通貨制度로서의 IMF 體制

朴 在 潤

目 次

- 序
- I. IMF 體制의 成立
 - II. IMF 體制의 內容
 - III. 國際通貨制度로서의 IMF 體制
 - IV. IMF 體制의 改革과 그 限界

序

第2次世界大戰의 終末을 앞두고 世界經濟의 再建을 위한 一連의 構想이 講究될 때 이를 위한 主要課題로서 제기되었던 다음의 문제들은 제2차 대전이 끝난지 20餘年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만족스러운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새로운 樣相으로 발전하여 오늘의 國際經濟를 꾀롭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강력한 國際協力의 基礎위에 貿易에 관한 諸制限을 緩和 내지 撤廢하고 보다 자유롭고 無差別한 貿易狀態를 실현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貿易의 擴大는 貿易에 관한 諸般 差別措置나 制限措置가撤廢되는 것만으로 實現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通貨金融의 側面에서 合理的인 國際通貨制度를 基盤으로 하는 원활한 國際金融活動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원활한 國際通貨制度의 確立은 世界經濟의 擴大均衡을 實現하기 위하여 不可缺하게 解決되어야 할 또 하나의 主要課題인 것이다.

끝으로 經濟發展의 地域的인 隔差의 縮小 내지 解消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世界經濟의 調和的 發展은 不可能하다. 貿易制限의 撤廢나 國際金融의 順調가 자유로운 國際分業의 擴大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經濟發展의 地域的인 隔差를 解消하는 努力を 隨伴하지 않는 國際分業의 擴大는 早晚間 그 限界를 露呈하게 되며 世界經濟의 擴大均衡의 實現은

沮止되고 마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課題와 더불어 發展隔差의 縮小 내지 解消가 오늘날 주요한 國際經濟問題의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

以上의 諸問題는 서로 關聯되지 않는 獨立的인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제 2의 문제, 즉 원활한 國際金融의 實현을 위한 基礎로서의 國際通貨制度에 관한 문제이다. IMF를 基盤으로 하는 現行의 國際通貨制度가 안정적인 機能을 수행하지 못하고 항상 動搖되고 있는 本質的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國際通貨制度의 改革은 현 행의 IMF體制內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 이 노트의 關心問題이다.

I. IMF體制의 成立

제 1차 세계대전이 勃發하기 전 1세기동안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國際金本位制度는 資本主義上昇期의 世界經濟가 輝力의였다는 사실과 金生產의 증가, 그리고 英國의 特權한 國際經濟의 地位 등과 같은 여러가지 유리한 背景에 힘입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고, 그것은 換時勢의 安定을 통하여 自由貿易의 擴大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의 勃發은 金本位를 支持하는 諸般 條件을 破壞하고 말았으며 이때문에 戰後에 再建된 金本位제도 오래지 않아 砂上의 樓閣으로 化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1차 대전후 1920 年代에 있어서 金本位制再建을 위한 노력이 傾注될 때부터 중대한 문제로 되었던 것은 運轉資金으로서의 金準備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이었으며 더구나 金의 偏在現象이 事態를 더욱 악화시켰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金不足을 극복하기 위하여 金을 절약하는 手段으로 金換本位制가 채택되기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金換本位制는 國際通貨制度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國際金融의 歷史上 불행한 경험을 남기는데 지나지 않았다.

1920 年代의 이러한 失敗는 1930 年代를 세계경제의 暗黒時代로 만들고 말았다. 國際金融의 混亂과 保護貿易의 橫行 등은 세계무역의 縮小와 失業의 慢性化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경쟁적인 換平價切下와 關稅戰爭은 제 2차 대전의 경제적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金本位制를 停止한 1930 年代에 있어서도 國際流動性 問題는 역시 심각한 것이었다. 短期資本의 投機的 移動이나 달러 및 파운드貨의 動搖는 對外準備手段으로서의 金의 役割을 더욱 증대시켰지만, 金의 供給은 부족되고 더구나 金의 偏在가 격화되었다. 따라서 美國以外의 국가들은 金準備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關稅引上을 활발히 진행시켰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金블럭은 輸入割當制度를 導入하였으며, 主要 債務國인 中近東 및 南美

諸國은 金準備擁護와 公定換時勢의 維持를 위한 換管理를 채용하였고 드디어는 貿易統制雙務의 清算協定 및 支拂協定 등이 등장하였다. 이들 諸政策은 國제금융을 混亂시켰음을 물론이고 多角的이고 자유로운 貿易을 저해하여 세계무역은 激減되는 상태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國제금융의 歷史를 간략히 서술한 것이지만, 위와같이 兩大戰간의 期間에 있어서 換切下 換管理 關稅戰爭 등의 사태가 세계무역의縮小와 불 liberty 化를 초래하여 제 2차대전의 경제적 요인이 되기도 하였던 쓰라린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認識이 제 2차대전후 IMF體制라는 國際間의 合意 내지 協定에 의한 國際通貨制度를 처음으로 탄생시키게 될 것이다.

兩大戰간의 期間에 겪은 世界經濟의 混亂을 反復하지 않기 위해 질서있는 國際通貨制度를 再建하고자 하는 試圖는 제 2차대전중에 이미 開始되었으며, 이에는 美英兩國이 指導的인 立場에 서서 각각 獨自的인 提案을 행하였는데, 英國의 그것은 J. M. Keynes의 國際清算同盟案이고 美國의 提案은 White의 構想을 기초로 하는 國際安定基金案이었다.

Keynes案이나 White案은 모두 兩大戰간의 期間의 경험에 대한 反省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多角的 貿易을 원칙으로 하고 國際去來에 관한 中央統制機構를 設置한다고 하는 점에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Keynes는 完全雇傭이나 成長을 더욱 重要視한 나머지 國際清算同盟에 信用創造機能을 附與함과 동시에 換時勢에 관하여도 彈力的인 運用을 주장하였다. 즉 Keynes案은 새로운 中央銀行이라고도 할 수 있는 國際清算同盟을 창설하고 bancor이라고 命名한 國際通貨가 그 役割을 遂行하게끔 하는 方式이었다. 『貨幣論』에서 金本位制를 과거의 遺物이라고 비판한 Keynes는 國際清算同盟으로 하여금 金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하였으며 基金制度가 아니라 當座貸越制度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信用創造가 가능하게 하고 더구나 償還에 대한 制約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White案은 換時勢를 사실상 固定시키고 加盟國이 國際收支上의 위기에 逢着할 때에는 「安定基金」이 援助를 제공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安定基金은 金과 自國通貨(各國別 quota에 따른 出資)로써 구성되고 各國別 quota는 各國의 外換保有高, 國際收支, 國民所得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며 이것이 援助額의 限度로 된다. White案의 Keynes案에 대한 특징은 信用創造를 행하지 않는 基金制度라는 점과 換時勢의 变경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설정하고 成長보다는 安定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두가지 提案을 두고 英國은 White案의 金本位的 性格을 강력히 비판하고 美國은

Keynes 案의 擴張主義的 性格에 대하여 크게 不滿을 表示하는 등 격렬한 論議가 전개되었지만, 1944년 7월 美國의 Bretton Woods에서 개최된 聯合國通貨金融會議는 無差別多角主義를 基盤으로 하여 안정적인 接近을 주장한 White 案을 基本的으로 採用하고 이에 Keynes 案을 補充的으로 加味하여 IMF 및 IBRD의 設立을 결정하고 聯合國 44個國이 이 協定에 調印함으로써 이른바 Bretton Woods 體制가 출발하게 된 것이다.

II. IMF 體制의 內容

IMF는 「國際貿易의 擴張과 均衡의 成長을 助長하고 이로써 모든 加盟國 經濟政策의 主要目標인 高水準의 雇傭 및 實質所得의 促進 및 維持와 生產資源의 開發에 貢獻」⁽¹⁾하기 위하여 세가지 구체적인 目標를 설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換安定을 促進하고 加盟國간의 질서있는 換決済를 유지하며 競爭的 平價切下를 避하는 것」⁽²⁾ 즉 換의 安定이며, 다른 하나는 「加盟國간의 經常去來에 관한 多角的 支拂制度의樹立 및 世界貿易의 成長을 沮害하는 外國換制限의 排除에 寄與하는 것」⁽³⁾ 즉 換의 自由化이며, 끝으로 하나는 「적당한 保障條件下에 基金의 資金을 加盟國에게 이용시킴으로써 國內 및 國際的 繁榮을 破壞하는 諸措置에 의존하지 않고 國際收支의 위기를 극복할 機會를 부여하고」⁽⁴⁾ 「加盟國의 國際收支不均衡의 持續期間을 短縮시키고 그 程度를 輕減시키는 것」⁽⁵⁾ 즉 資金의 供給 등이다. 이들 세가지 목표와 관련하여 IMF가 採擇하고 있는 諸方策을 一覽하여 보자.

먼저 IMF協定 第4條은 「各 加盟國의 通貨의 平價는 共通尺度인 金에 의하거나 또는 1944년 7월 1일 현재의 金含量 및 純度에 의한 美國의 달러貨로써 표시된다」고 규정하여 通貨의 尺度를 金과 달러에서 구하고 있으며, Keynes 案이나 White 案에서 제안된 새로운 國際通貨單位는 制定하지 않고 있다.

IMF 加盟國은 IMF와 협력하여 自國通貨의 平價를 설정할 義務를 가지며 이것이 IMF의 資金援助의前提가 된다. 이 平價는 加盟國이 金의 賣買를 행할 때 그 基準이 되는데, IMF가 정한 變動幅을 平價에 加減한 범위內의 가격, 즉 구체적으로는 平價의 0.25%에 運送費, 保險料 등의 特定經費를 加算한 範圍 또는 平價의 1% 範圍內의 價格으로써 金의

(1) 國際通貨基金協定 第1條 (ii)

(2) 同 (iii)

(3) 同 (iv)

(4) 同 (v)

(5) 同 (vi)

賣買가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 平價는 換時勢의 기준으로 되며 加盟國은 直物換去來의 경우 平價의 上下 1%의 범위內에 換時勢를 유지할 책임을 가진다.

이와같이 IMF은 원칙적으로 固定換時勢主義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一定의 條件이 충족될 때에는 平價의 變更이 가능하다. 즉 基礎的 不均衡이 存在하고 그것을 是正하기 위하여 平價의 變更이 不可避할 경우에는 이를 許容하고 있다. 그러나 加盟國이 自身의 裁量으로써 平價를 變更할 수 있는 것은 第1次 平價의 10% 범위內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변경은 모두 IMF의 事前承認을 필요로 한다.

그밖에 IMF協定은 平價의 一律變更 즉 金價格의 引上 또는 引下가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加盟國의 賛成投票가 過半數에 달하고 IMF全體의 10%以上의 quota를 가진 加盟國의 承認이 있어야 하며, 平價의 一律的인 變更이 결정된 경우에도 이를 希望하지 않는 국가는 결정후 72시간以内에 그趣旨를 IMF에 통고하면 變更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IMF는 換時勢의 維持와 安定을 통하여 國際去來의 안정적 발전을 圖謀하고자 하기 때문에 平價의 유지가 그 基本目標이지만, 換時勢는 各國의 經濟政策上 不可缺한 對外政策手段이므로 이를 超國家的 機關에 의하여 固定시킬 것인가, 아니면 彙力의으로 各國에게 그 變更의 權限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重大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MF는 兩者의 性格을 混合하여 平價政策을 취하고 있지만 本質的으로는 平價의 維持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즉 平價의 變更을 위하여는 IMF와의 事前協議가 필요하기 때문에 平價의 變更이 소망스럽지 않다고 判斷되면 IMF는 平價의 變更을 中止할 것을 勸告할 수 있고 만약 IMF가 認定하지 않은 平價의 變更을 행할 때에는 IMF資金의 利用이 拒否되며 나아가서는 IMF로부터 除名될 수도 있으므로 加盟國이 平價變更를 濫用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IMF는 兩大戰간의 期間에 있어서 換管理나 清算協定의 橫行이 世界貿易의 混亂과 縮小를 초래한 前轍을 막지 않기 위하여, 經常支拂에 대한 制限의 撤廢와 差別的通貨措置의 撤廢 및 外國保有殘高의 交換性維持 등의 義務를 加盟國에게 부여하고 있다.

첫째의 經常支拂의 自由化는, ① 外國貿易 其他の 經常的 去來 및 正常의 短期의 銀行 및 信用操作에 관련하여 행해지는 支拂, ② 貸出에 대한 利子 및 기타 投資로부터의 純所得으로서 행해져야 할 支拂, ③ 貸出의 賦拂償還 또는 直接投資의 償却을 위한 妥當한 金額의 支拂 ④ 家族生活費를 위한 妥當한 金額의 送金 등을 포함한다. 이와같이 IMF의 支拂의 自由化는 經常去來에 限하고 資本去來는 對象外로 하고 있는데, 이는 兩大戰간

의期間에 있어서 hot money의 亂舞가 國際金融上의 撫亂要因이 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국제간에 대량의 資本이 移動하는 경우 특히 政情不安이나 換時勢의 變更 등의 이유로 資本逃避가 행해지고 投機的인 資本移動이 있을 때에는 이를 制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의 差別的 通貨措置의 撤廢는 雙務協定, barter去來, 輸出入 link制 등과 같은 差別的 通貨決濟와 複數換時勢 등과 같은 複數通貨措置를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로 IMF은 多角決濟制度의 확립을 위하여 外國이 보유하는 自國通貨殘高의 交換性을 各 加盟國이 保證할 것을 要請하고 있다. 이와같이 IMF은 換制限의 除去를 목적하고 있지만, 戰後의 過渡期에 있어서와 稀少通貨의 宣言을 행한 때에는 例外的으로 換制限을 許容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IMF은 換平價의 變更이나 換制限의 導入에 관하여 이를 상당히 엄격히 制限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制限을 前提하면 國際收支에 不均衡이 발생하였을 경우 國內의 有效需要와 雇傭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高水準의 雇傭 및 實質所得의 向上을 꾀하고 있는 IMF의 趣旨에 反하는 만큼 IMF는 國際收支의 逆調를 예방하기 위한 國際決濟手段의 提供을 講究하고 있다. 즉 一時的으로 一國의 對外的 不均衡이 발생한 경우에 IMF는 어느정도까지 이 국가에 대하여 外貨를 공급하고 國際收支均衡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支援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제 IMF의 資金供給에 관하여 그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자.

첫째 IMF의 資金供給은 단순한 融資가 아니고 加盟國이 自國通貨를 對價로 하여 IMF로부터 外貨를 購入하는 形式을 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IMF協定에서는 이를 「IMF와 加盟國간의 換去來」⁽⁶⁾라고 표현하고 있다. 두째로 資金의 使用目的이 國際收支의 短期的인 不均衡을 是正하는 것에 限定되고 基礎的인 不均衡은 平價의 變更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IMF은 各 加盟國이 이용한 資金을 早速히 返済하도록 하기 위하여 資金의 이용기간이 길수록 金利를 높이고 있다. 즉 1년정도의 資金利用은 金利가 2%정도이지만, 2年, 3年으로 되면 4% 前後로 되고 4年~4年6個月의 경우에는 5.0%까지의 課金을 徵收하며, 그리고 課金이 累積되어 그 比率이 4%에 이르면 加盟國은 그 殘高를 減少시킬 方法을 IMF와 協議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 IMF 資金은 經常去來의 支拂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지만 1961년 7월以來 資本去來에 의한 赤字의 是正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擴大解釋되고 있다.

(6) 國際通貨基金協定 第5條

넷째로 IMF 資金利用은 各 加盟國의 quota에 의해 量的 規制를 받는다. IMF 協定은 IMF 가 保有할 수 있는 當該國通貨를 quota의 200%에 限定하고 있는데 各 加盟國은 quota의 75%를 自國通貨로서 出資하고 있으니까 加盟國의 外貨利用限度는 quota의 125%에 해당하는 셈이며 各 加盟國은 一時에 이 限度까지의 資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quota의 25%까지이며, 다만 當該國通貨의 IMF 保有額이 75% 以下인 경우에는 75%에 이르기까지는 이 制限으로부터 除外되고 있다. 그리고 IMF 資金은 그 利用金額이 增加함에 따라 引出條件이 업격해지는데, quota의 25%에 해당하는 gold tranche에 관하여는 자동적으로 引出되고 그 다음의 1/4 즉 first tranche에 관하여는 形式的인 審査에 그치지만, second tranche 까지 引出하는 경우에는 加盟國이 일정한 經濟安定計劃을 수립하여 IMF의 審査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third tranche 까지는 더욱 完全한 安定計劃을 IMF 와 共同으로 作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加盟國은 IMF 保有의 自國通貨가 過剩으로 될 때에는 이를 買入할 義務를 가진다. 즉 各 加盟國은 IMF가 quota를 超過하는 自國通貨를 保有하고 있을 때에는 金과 引換하여 그 全部 또는 一部를 買入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IMF의 每會計年度마다 一定의 條件下에 정기적으로 金 또는 交換可能通貨(第8條國通貨)로써 買入할 義務를 가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特定國의 통화에 관하여 IMF의 保有額이 稀少하게 되는 경우에는 最後의 手段으로서 「稀少通貨宣言」이 행해진다. 즉 어떤 加盟國의 通貨에 대한 資金需要가 旺盛하여 IMF의 供給能力에 不安이 存在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될 때 IMF는 이를 稀少通貨로서 宣言하고 그 以後 各加盟國에 대한 當該通貨의 供給은 各國의 상대적 必要度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割當制를 실시하는 한편, 各 加盟國은 IMF 와의 協議에 따라 稀少通貨에 관한 換去來의 自由에 대하여 差別的인 制限을 실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措置의 목적은 IMF가 保有하는 各國 通貨간의 均衡을 취하는데 있으며 특히 通貨의 歪曲에 의하여 IMF의 資金供給의 彈力性이 沮害되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III. 國際通貨制度로서의 IMF 體制

前述한 바와같이 IMF는 제2차 세계대전後 世界經濟의 새로운 構圖로서 성립된 Bretton Woods體制의 通貨金融의 側面을 담당하는 一翼으로서 出發된 것이지만, 戰後 IMF體制가 國際通貨制度로서 결코 만족스러운 機能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Bretton Woods體制 그自體가 전반적인 失敗로 돌아간 사실⁽⁷⁾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Bretton Woods體制가 실패한 것은 그것이 内包하는 IMF IBRD GATT 등 個個의 機構의 결함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여기서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 機關으로써成立된 全體의 構成에 있어서 統一的인 秩序, 다시 말하면 體制內部에 綜合的인 視野가 결여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IMF에 있어서 換安定의 문제와 GATT 등에 있어서 貿易의 문제가 서로 分離되어 취급되었다는 사실에서 端的으로 드러나며 더구나 貿易의 문제보다 通貨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한 것은 經濟再建의 課題를 해결하는 옳바른 方途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⁸⁾, 貿易制限을 放置한 것은 換安定의 趣旨와 合致될 수 없는 것이며 Bretton Woods體制에 있어서는 通貨面의 計劃과 실질적인 通商政策간에 충분한 調整이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이와같이 世界經濟의 不均衡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고部分的인 側面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한 것은 Bretton Woods體制의 重大한 缺陷이 아닐 수 없었다.⁽⁹⁾

그리고 Bretton Woods體制는 戰後의 過渡期에 있어서 發生될 諸因難을 過少評價하고 그것을 克服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또 하나의 중요한 缺陷이 있었다. 戰後 過渡期의 代表的인 因難은 달러不足이었지만, 당시의 달러不足에는 IMF와 IBRD의 資力으로써 도저히 對處할 수 없었으며, 過渡期의 克服을 위하여 IMF가 各國의 平價設定을 급속히 서두르고 이를 유지하기에 노력한 나머지 戰後 需要가 生產을 上廻하고 있던 世界各

(7) Bretton Woods體制가 發足한 당시에 樂觀的인 견해를 가졌던 G. Haberler 조차도 다음과 같이告白하고 있다. 「Bretton Woods 計劃이 훌륭하게 성공하였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많은 專門家들은 솔직까지도 국제수지가 위험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무역의 자유화와 通貨의 부분적인 交換性의 實現에 어느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EPU라는가 스털링·불록내에서의 差別의 基盤에 입각한 地域的인 것에 불과하였다.」(G. Haberler, "Reflections of the Future of the Bretton Woods System,"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Sixtyfif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3).

(8) T. Balogh, *Dollar Crisis, Causes and Cure*, 1949, pp. 151~2.

(9) 東洋經濟新報社, 『經濟學大辭典』 II, 1955, p. 500.

國은 國際收支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損管리나 貿易統制를 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⁰⁾

이와같이 Bretton Woods體制가 發足當初부터 가졌던 缺陷 外에도 現行의 IMF體制는 그 自體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¹⁾

첫째로 IMF體制는 國際流動性의 供給方式을 基金原理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流動性의 供給規模가 保有資金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다. IMF는 創設後 두차례의 增資에 의하여 그 資金供給能力이 擴大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國際通貨에 대한 需要가 달려를 비롯한 主要國通貨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현재와 같은 基金方式으로 이에 對處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各國의 外貨需要가 特定通貨에 偏倚됨으로써 달러 등을 제외한 많은 국가의 通貨가 IMF에 遊休狀態로 退藏되고 있으며 그만큼 IMF의 保有資金은 그 效率이 沮害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IMF資金의 借入手續이 嚴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MF은前述한 바와같이 發足當初의 規程에서는 各國의 借入總額을 出資割當額의 200%에 한정하고 年間 利用範圍도 25%로 제한하였지만 그 뒤 stand-by-credits 方式의 採用이나 25% 限度의 引上 등에 의하여 借入規程을 緩和하고 있지만, 借入國의 立場에서는 아직도 그 條件이 嚴格하여 各 加盟國은 사태가 不可避할 정도로 惡化되기까지는 IMF로부터 借入을 행하지 않고 그 때문에 早期回復의 機會를 놓지는 罪害가 隨伴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는 IMF가 主要國通貨의 不安에 대하여 抵抗力を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즉 IMF가 行하는 主要國通貨의 貸出은 當該主要國의 立場에서는 그 交換性을 保證하는 限 短期債務가 增加되는 셈이고 이는 國際收支赤字로 인하여 蓉起된 短期債務의 增加나 마찬가지 效果를 가진다. 이 점에 있어서 IMF體制는 key currency system이 가지는 根本的인 不安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IMF의 諸문제점은 IMF體制가 金換本位制度의 原理에 입각하여 國際通貨制度를 形성하고 있다는 보다 本質的인 사실에서 緣由한다.

現行의 國際通貨制度는 근본적으로 國際金換本位制度——보다 具體적으로는 달러換本位

(10) 需要在 生產을 上廻하여 인플레壓力이 支配하는 경우에 換時勢를 고정시키면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 데플레政策이나 換·貿易統制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Bretton Woods體制는 國內의 높은 臨儲水準을前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플레政策은 不可하였던 것이다.

(11) 土屋六郎, 『國際金融の構造と理論』, 1953, pp. 307—8.

制度이며 또한 스텔링 地域에 있어서는 파운드換本位制度이다——이며 金換本位制度가 가지는 國際收支均衡에 대한 이론바 「自動的 不安定裝置」⁽¹²⁾를 對抗의으로 補完하고자 創設된 것이 오늘날의 IMF體制인 것이다.

제 1 차대전後의 國際金換本位制度가 「제네바」 會議에서 제안된 各國 中央銀行간의 協約이 締結되지 않고 실시되었던 데 反하여, 제 2 차 세계대전後에 부활된 國際金換本位制度는 國際協力を 목적하는 國際通貨基金協定의 基礎 위에 樹立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의 金換本位制度가 제 1 차대전後의 그것처럼 短命에 그치지 않고 그 壽命이 보다 오래持續되고 있는 理由도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러나 國際通貨基金協定을 基礎로 하는 현재의 金換本位制度는 제 1 차세계대전前의 金換本位制度와는 달리 國제통화제도로서 화려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1930 年代와 마찬가지로 世界經濟를 危機에서 解放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國際通貨制度의 改善策이 間斷敘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國際金本位制度下에서는 世界貨幣로서의 金이 各國간의 去來의 정도에 따라 各國간에 자유로이 移動하여 再配分되고 그 移動 및 再配分이 적절할 때에는 거기에 國際均衡이 실현되는 것이며, 이 경우 만약 金이 一國에 滯留되게 되면 그것은 바로 國際金本位制度의 實質적인 停止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國際均衡은 파괴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貨物流通의 用具인 金은 많든 적든 간에 國際決済의 役割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國際均衡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金의 量이 적을 때에는 物價의 下落을 免할 수 없고 國內均衡은 破壞되고 만다. 金換本位制度를 채용함으로써 換準備에 의하여 金準備를 補充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같이 金의 量이 적기 때문에 物價의 下落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코 金을 절약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¹³⁾

이와같이 金의 不足分을 補充하기 위하여 金換本位制度가 채용된다면 이 제도의 결함은 비교적 輕微한 것이 될 것이지만, 제 1 차대전後 金換本位制度의 再建이 金의 不足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金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思考方

(12) 橋口午郎, 『國際金融論』, 1967, p. 151.

(13) D. Ricardo에 의하면 「國際金本位制度의 機能은 金의 自由移動에 의하여 國제결제를 行할과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國제균형을 자동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으며 이와같이 하여 國제균형이 실현될 때에는 金은 전혀 상징적인 存在量으로써 충분한 것이다.」(D. Ricardo, "High Price of Bullion," *Economic Essays*, ed by Gonnen 1923) 이러한 Ricardo의 原則이 忘却되지 않는다면 金換本位制度가 採用되더라도 金은 去來의 정도에 따라 各國간에 배분되고 爭奪이나 偏在나 退藏의 對象으로 되지 않고 金의 不足分—— 物價下落을 阻止하기에 필요한 金의 量이라고 하는 觀點에서의——만이 金換에 의하여 補充되는 것이다.(橋口午郎, 『前掲書』, p. 153).

式은 各國 中央銀行으로 하여금 金의 爭奪과 退藏에 及及케 하고 그것은 1929~31년의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야기시켰으며 1931년에 英國의 金地金本位制度가 정지된 것을 계契機로 하여 金換本位制度의 全面的 崩壞가 不可避했던 것이다.

적어도 貨幣用金에 관한限 그것은 國際間에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비로소 그意義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爭奪이나 偏在나 退藏의 對象으로 되면 그때에는 이미 金地金本位制度는 물론 金換本位制度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金換에 의하여 金의 不足分을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더라도 金換에 의하여 金의 절약을 도모하는 것은 金換本位制度의 참된 意味를 망각한 것이며 그制度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다.

그러나 金換本位制度에 나타나는 이러한 缺陷은 그 運營上의 過誤에 기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運營上의 改善에 의하여 解消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金換本位制度는 이러한 運營上의 過誤뿐만 아니라 다시 原理上의 缺陷까지도 지니고 있다.

現行의 金換本位制度는 주지하는 바와같이 金 外에 基軸國通貨——구체적으로는 달러換이나 파운드換 등——를 準備資產으로 하는制度인데 이 제도는 基軸通貨國의 國際收支가 赤字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잘生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均衡이 회복되어 赤字가 消失하는 때에는 그 生命은 자연히 斷絕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國際通貨는 그것에 의하여 國際決濟를 行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國際均衡이 실현되는데 그意義가 있으므로, 현행의 國제금환본위제도가 國際均衡의 沮害를前提하고 서만 비로소 成立할 수 있다는 事實은 國제통화제도로서는 原理的인 缺陷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原理的 缺陷은 실로 致命的인 것이 아닐 수 없다.

原理上의 致命的인 缺陷을 가진 金換本位制度가 19世紀에 성공을 거둔것은 당시 植民地나 後進國이 保有하고 있던 本國이나 先進國에의 換準備가 世界總準備資產에서 擠하는比重이 적었으므로 이 제도의 原理的 缺陷도 당시에는 格別한 영향을 미칠 餘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第1次世界大戰後의 金換本位制度가 失敗로 돌아가고 第2次世界大戰後의 그것도 항상 危機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基軸通貨國——美國이나 英國——의 赤字를 전제하고 餘他의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採用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현행의 國제통화제도는 「自動的 不安定裝置」를 內包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IV. IMF體制의 改革과 그 限界

叙上한 바와같이 國際通貨制度로서의 原理的인 缺陷을 가진 IMF體制는 그 創設以來 이에 대한 많은 改革論이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여러차례의 改革을 거쳐多少의 變質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現行體制의 基本的原理下에서의 部分的補完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는 IMF體制의 變質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몇가지 주요한 論議를 提示하면서 이러한 논의의 영향을 받아 IMF體制가 變化를 일으킨 內容을 略述하고 그러한 變化가 原理的缺陷의 除去에까지 進展하지 못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IMF의 改革에 가장 最初로 實質的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 IMF의 專務理事였던 Per Jacobsson의 提案이었고 이 提案은 기본적으로 E.M. Bernstein의 提案⁽¹⁴⁾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Bernstein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内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國際的短期資本移動으로 인하여 起起되는 主要國의 國際收支困難의 救濟策이고, 다른 하나는 IMF資金供給의 積極化政策이다.

前者의 概要는, IMF가 債券을 發行하여 資本流入國에 引受시키고 그에 의하여 얻은 資金으로써 資本流出國에 대한 救濟的貸與를 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본디 IMF은 資本移動에 대하여는 資金利用을 不許하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에 이에 抵觸되지 않기 위하여 Bernstein은 「外貨準備決濟計定」이라고 하는 別途의 計定을 만들어 위와같은 操作을 행할 것을 提案하고 있다. 이러한 提案은 國際流動性問題의 根因이 對外支拂手段의 偏在에 있다고 하는 認識에서 출발된 것이며 外貨準備決濟計定의 設定은 外貨準備偏在의 是正手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Bernstein의 第2의 提案은 IMF의 融資條件이 더욱 緩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各國은 IMF와의 去來를 特別한 融資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自國의 外貨準備와 마찬가지로 認識하여 第2線級準備로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와 아울러, IMF의 문제점의 하나는 特定通貨에 대한 需要가 集中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交換性이 回復된 以上 餘他의 交換可能한 通貨에 의한 貸出로써도 資金供給의 目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貸出通貨의 多樣化政策이 必要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Bernstein案은 IMF의 實際運營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貸出通貨의

(14) E. M. Bernstein, "International Effects of U.S. Economic Policy," *Study Paper*, No. 16, 1960, pp. 84—6; "The Adequacy of United States Gold Reserv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I, No. 2, 1961.

多樣化는, 종래 美國의 달러貨에만 偏重되어온 貸出通貨를 通貨準備에 餘裕가 있는 交換性回復國의 通貨에 되도록 分散시키는 것에 위하여 美國의 負擔을 輕減시키려는 趣旨에서 1960년以來 實施되어 왔으며, 資本移動에 대한 IMF의 [融資에 관하여는 第6條를 擴大解釋함으로써 「外貨準備決濟計定」을 별도로 設定하지 않고도 IMF의 現行 規程內에서 處理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이 IMF의 資金補強問題이다. 이 문제가 1961년 9월의 IMF總會에서 Jacobsson案을 낳게 하였다.]⁽¹⁵⁾

Jacobsson案은 國際通貨制度의 安定을 沮害하는 國際金融上의 變動을 諒防하는 데 그 趣旨가 있지만, 實質적으로는 달러 防衛에 主眼을 둔 것이다. IMF는 美國以外의 국가가 借入을 申請하면 以前의 달러不足과 같은 커다란 不均衡이 없는 限需要에 응할만큼의 資金을 保有하고 있지만, 美國이 그 限度(約 50億달러)까지 申請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餘裕가 없으므로 만약 美國이 巨額의 短期資本流出에 의하여 달러不安이 一層 激化되는 사태가 생기면 IMF는 이에 對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IMF는 資金強化를 위해 10個 主要工業國(Paris group諸國)과 stand-by credits 方式에 의한 總額 60億 달러의 借入을 決定하자는 것이 Jacobsson의 提案이었다. 이 資金의 用途는 資本移動에 의한 國際收支困難에 限定되고 出資國이 10個國에 限定되기 때문에 IMF의 테두리內에서 處理될 수 있는 것이다. 이 提案은 西歐의 2·3個國이 反對하였지만 1962년에 成립되어 發效하게 되었다.

IMF의 改革案으로서 注目되어야 할 最近의 것은 1964년에 發표된 國際流動性增強策에 관한 10個國財務長官會議의 共同聲明이다.⁽¹⁶⁾ 그 骨字는 다음과 같다.

- (1) 國際經濟의 擴張에 응하여 信用을 供與하는 機能(creidts facility)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見地에서, IMF의 出資割當을 增額할 것을 支持한다.
- (2) 國際協調에 기초를 둔 金融緊縮을 重要視하는 觀點에서 10個國財務長官會議는 國際決濟銀行 등을 통하여 國際收支不均衡의 是正을 위한 多角的 共同審議(multilateral surveillance)를 행한다.
- (3) 經濟協力開發機構 第3分科會에서 各國의 國際收支 逆調對策 및 調整過程에서 취해야 할 措置를 검토한다.

(15) Per Jacobsson, "The Two Functions of an International Monetary Standards Stability and Liquidity," *Bulletin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the Monthly Bulletin of the National Bank of Belgium, Apr. 1962.

(16)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Group of Ten*, Aug. 1964.

(4) 新準備資產을 創設하기 위한 研究 group 을 財務長官會議內에 設置한다.

위와같은 聲明中 第(1)項의 IMF 增資에 관하여는 1964년 9월의 IMF 總會에서 그것이 可決되어 quota 를 160億달러로부터 210億 4700萬달러로 增額하는 IMF 의 第2次 增資가 이루어 졌으며, 第(4)項에 관하여는 1965년 8월에 研究 group 的 報告가 제출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Ossola 報告⁽¹⁷⁾이다. 이는 金과 달러로써는 世界貿易의 擴大를 支持하기에 불충분하다는 認識을 기초로 하여 新準備資產創設에 관한 技術的 側面을 檢討 整理한 것이다.

Ossola 報告는 新準備資產創出을 위한 諸提案을 ① CRU 案 ② IMF 擴充案 ③ 外貨保有者에 대한 代替資產提供案의 세가지 部類로 分類하고 각각의 長點과 缺點을 檢討하여 流動性創出問題의 本質과 技術的 問題點의 所在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CRU 案이라 함은, 先進國의 通貨當局에 의해 金과 밀접히 連結된 形態의 準備資產을 創出하는 構想이다. 즉 先進國은 代理機關(예컨대 BIS)에 대하여 金 또는 金價值保證附의 自國通貨를 預託하고 이에 대한 無利子의 債權인 CRU 를 受取하며 代理機關은 同額의 金 또는 當該國通貨를 各國에 預託한다. 이때 各 加盟國의 BIS 에 대한 債權(CRU) 는 各 加盟國의 對外準備에 算入되는 한편 加盟國의 BIS 에 대한 債務는 對外準備에서 控除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準備資產이 創出되는 것이다.

또한 IMF 擴充案은 크게 두가지 方向의 改善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IMF의 引出權을 擴大하는 方向인데 그것은 通常引出權의 擴大나 自動引出權의 擴大 혹은 gold transche의 擴大 등에 의하여 新準備資產의 創出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IMF 가 特別 operation 을 행하는 方向이다. 즉 IMF 가 全加盟國 또는 特定加盟國에 대하여 IMF quota, 對外準備 또는 其他의 一般的 基準에 基於各國의 自國通貨 혹은 交換可能通貨를 投資함으로써, 自國通貨投資의 경우 各國은 投資額에 따른 IMF 準備 position 을 取得하여, 交換可能通貨投資의 경우에는 被投資國의 對外準備가 增大하는 한편 被使用通貨國은 IMF position 을 取得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IMF의 特別 operation의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는 主要工業國이 IMF에 대하여 自國通貨를 預託하거나 貸與함으로서 IMF 準備 position 을 取得하게 된다. 이같은 特別通貨의 operation 은 결국 新準備資產을 創出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다.

끝으로 外貨保有者에 대한 代替資產提供案은 主要工業國(특히 黑字國)이 保有하는 準備通貨를 IMF에 대한 債權으로 代替함으로써 準備通貨에 대한 金兌換請求의 累增을 回避

(17) Group of Ten,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Creation of Reserve Assets, May 1965.

하고자 하는 構想이다.

이상과 같은 Ossola 報告의 檢討中 IMF에 의한 新準備資產創出로서 通常의 引出權에 의한 operation과 特別通貨에 의한 operation의 雙方에서 流動性增加을 圖謀하자는 思考는, 1966년의 Hague 報告⁽¹⁸⁾를 거쳐, 1967년 9월의 IMF 總會에서 特別引出權(SDR)의 創出이 決定되기에까지 이르렀으며, 1968년의 총회에서 이를 위한 IMF 協定의 改正이 이루어졌다.

SDR은 現存 準備資產을 補完할 필요가 있을 때 그 必要를 충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新準備資產이다. SDR의 本質에 관하여는 그것이 單純한 credits facility인가, 아니면 하나의 國際通貨인가 하는 論點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의 關心對象이 되는 것은 SDR에 의하여 補強된 現行의 IMF體制가 그 原理的 缺陷을 克服하고 國際通貨制度로서의 원활한 機能을 遵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SDR은 流動性增強을 위한 有力한 手段이며 더구나 그 流動性이 달러의 補強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EEC諸國의 엄격한 監視下에 있다는 點이 特徵의이다. 現行 IMF의 引出權方式에서는 美國이 커다란 使用可能性을 가진 데 대하여 SDR制度下에서는 美國의 영향력은 弱化되고 있으며, 從來의 IMF가 그 融資能力에 限界를 가지고 있던 것이 今番의 SDR에서는 是正되고 있다.

그러나 SDR은 流動性에 대하여는 有效한 對策일련지 모르나, 이른바 「信認」과 「調整過程」에 관하여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國際收支緊縮이 輕視될 가능성이 강한 SDR의 創出은 國際收支調整의 문제를 不徹底한 그대로 남겨두고 있으며, 때문에 SDR의 信認自體도 徹底한 것은 되지 못하고 있다. EEC가 國際流動性問題에 있어서 國際收支緊縮과 金融緊縮을 엄격히 赤字國에 要求하였지만 이것이 SDR의 創出에서 貫徹되지 못한 것이다. SDR의 引出에 있어서는 國際收支의 赤字規模나 赤字可能性의 事前審查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過去의 國際金融協力의 各國의 金融主權에 介入하는 承認을 必要로 하였던 것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의 SDR에 있어서도 信認의 문제는 國際收支克服의 態度如何에 달린 것으로서 將次 SDR의 信認의 維持·向上은 國際收支調整過程의 문제를 除去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IMF에 관하여는 上述한 바와같이 그 設立以來 改善策이 不斷히 講究되어왔고 또한 파운드危機나 달러危機에 對處하여왔지만, 그것은 모두 quota의 增額이라든가 出資限度의 補強이나 또는 資金利用方法의 容易化 등의 範圍內에 限定되는 것이었고 最近의 新準

(18) Group of Ten, *Communiqué of Ministers and Governors and Report of Deputies*, July 1966.

備資產의 創出도 새로운 國際通貨制度의 創設에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이른바 基金機能에 期待하고 있는 限 IMF體制에 缺如되고 있는 國際收支의 自動的 均衡回復機能의 補充은 도저히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現行 金換本位制度의 自動的 不安定裝置를 그대로 溫存시키면서 그위에 弥縫策을 講究하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본디 國際通貨의 機能은 그것을 授受함으로써 國際間의 決濟를 행함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 國際均衡을 圖謀함에 있으며 國際金本位制度下의 金의 機能도 이와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IMF體制에서는 國際收支의 一時的 不均衡을 메꾸기 위한 融資가 試圖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는 國際均衡 그 自體를 回復하려고 하는 機能이 전혀 缺如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一國의 外國으로부터의 財貨 및 用役의 輸入에 대한 支拂은 究極의 으로는 그 국가의 外國에 대한 財貨 및 用役의 輸出代金에 의하여 調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國際收支의 均衡이 破壞되어 그것이 逆調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逆調에 관하여는 그 原因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에 대한 改善策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나 그 效果가 나타나기까지에는多少 時日을 요하는 것이며 對外準備資產이란 이 경우 金融役割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對外準備資產은 항상 충분히 保有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므로 IMF體制는 이러한 경우에 援助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反面에 IMF體制는 國際收支의 不均衡 그 自體를 除去하여 輕減시키려고 하는 것에는 寄與하지 않는 것이다. 美國의 國際收支가 惡化하면 西歐諸國에 달려 準備가 堆積하고 그 달려에 대하여 金에 의한 引出請求가 高潮되면 달려本位制는 危機에 逢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美國의 國際收支가 改善되면 西歐諸國은 달려準備를 費失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달려本位制는 自然死하고마는 것이다. 將次의 國際通貨는 金換本位制度의 이러한 根本的 缺陷에 대하여 단순히 應急의 弥縫策을 강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缺陷 自體를 除去하는 데까지 發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補助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助教